

SRI

이슈 & 포커스

2021. 11. 30.

수원시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및 체계 구축

이영안*, 이혜연**

*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, yalee@suwon.re.kr

**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, hyeyeon@suwon.re.kr

요약

- 수원시는 「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», 「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», 「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», 「수원시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지침」에 근거하여 수원시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 시스템 구축
- 성희롱·성폭력 고충사건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, 대리인, 목격자 등은 고충상담원, 인권센터에 전화, 온라인, 서면, 방문 등으로 상담 신청, 신고, 제보 가능
- 성희롱·성폭력이 인정되는 경우 「수원시 공무원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지침」 제17조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 진행, 징계양정은 『지방공무원 징계 규칙』 제2조제1항 <별표 1> 징계기준에 따름

정책제안

-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·성폭력은 지위 및 권력관계를 이용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수원시와 협업기관이 사건 처리 시스템을 활용
- 수원시 및 협업기관 구성원들은 성희롱·성폭력을 정확히 인지하여 예방
- 본인 혹은 주변에서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사건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

Keyword : 성희롱, 성폭력, 디지털 성폭력, 사건 처리 시스템

수원시정연구원 이슈 & 포커스는

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수원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원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.

I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1 연구의 배경

-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·성폭력은 지위나 권력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, 조직 구성원 간의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조직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야기시킴
- 여성가족부는 『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』을 제작하여 배포
- 이에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‘수원시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및 체계’를 구축하고자 함

2 연구의 목적

- ‘수원시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및 체계 구축’을 통해 수원시 협업기관, 위탁시설, 사회복지시설 등 기타 다양한 조직에 수원시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(안)을 마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사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- 더불어 수원시 및 협업기관 구성원들은 조직 내 성희롱·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II. 성희롱·성폭력 /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해

1 성희롱이란

1) 성희롱 정의

-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(性的)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함
- 성희롱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및 피해자가 법률에서 말하는 행위자와 피해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, 업무 관련성 여부 및 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했는지,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도 파악해야 함
- 성희롱의 행위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및 사용자 또는 근로자 포함
- 성희롱의 피해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및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업무, 고용, 그 밖의 관계에서 성희롱을 당한 사람
- 지위 & 업무 관련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함
- 행위는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된 행동이 성적 언동에 해당되어야 함

2) 성희롱 주요 키워드

[표 1]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

구분	국가인권위원회법	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	양성평등기본법
행위자	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및 (민간사업체)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	사업주, 상급자 또는 근로자 고객 등 제3자	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및 (민간사업체)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
피해자	불특정	다른 근로자	불특정
지위 & 업무 관련성	업무, 고용,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	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	업무, 고용,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
행위	성적 언동 및 그 밖의 요구		

2 성폭력·디지털 성폭력이란

1) 성폭력·디지털 성폭력 정의 및 유형

-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
- 성폭력에는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및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과 같이 민사적 대응 또는 비사법적 절차로 권리가 구제되는 유형도 포함됨
- 디지털 성폭력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및 유포, 유포협박,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하며, 젠더에 기반한 폭력임. 그러나 모든 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니며,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가 아닌 것은 아님
- 디지털 성폭력에는 온라인·인터넷 기반 성폭력, 성적 이미지 조작·착취 성폭력, 온라인 기반 성매매, 온라인상의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되며, 행위를 매개하는 기술적 의미와 피해 발생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음

2) 성희롱·성폭력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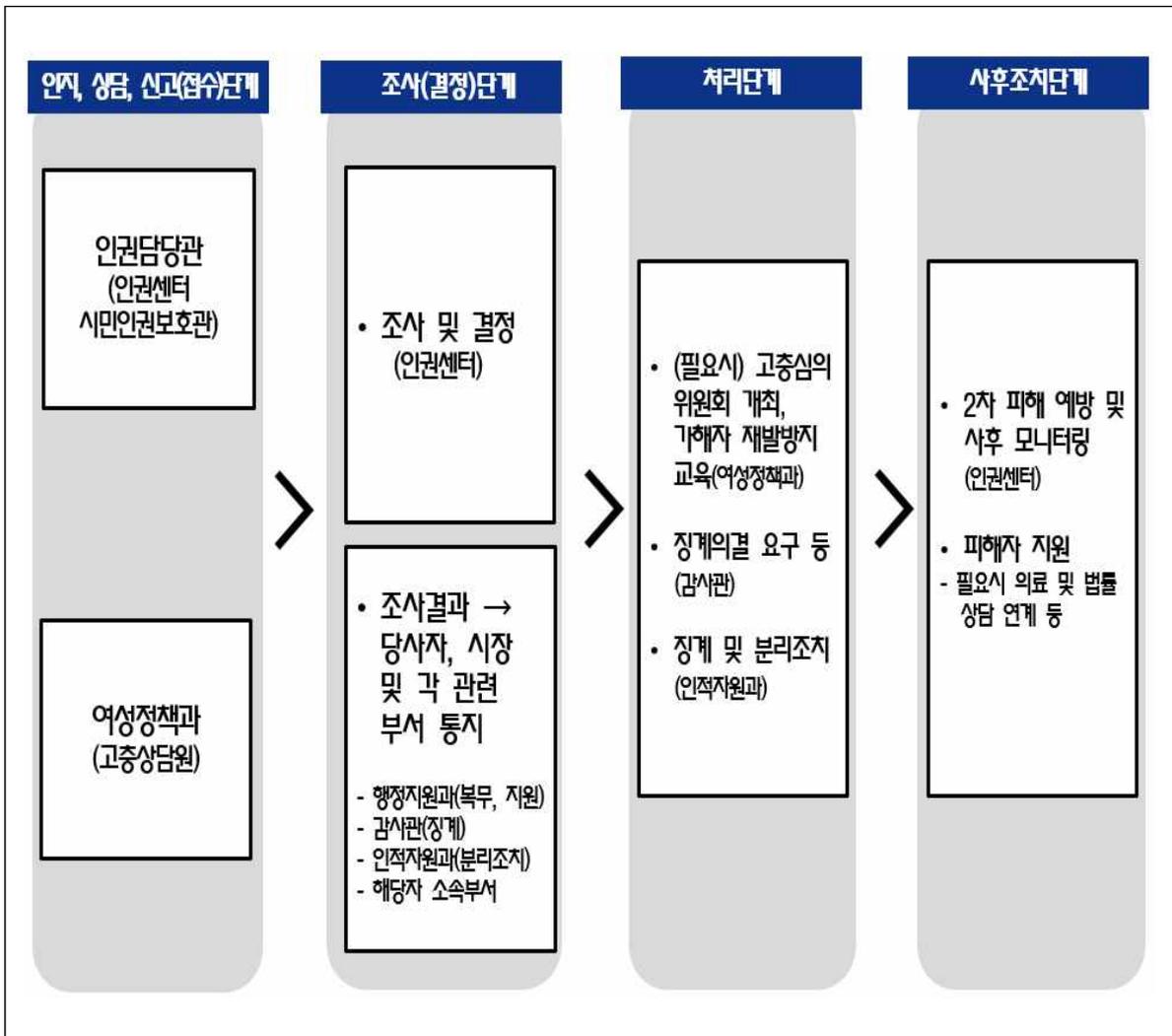
- 공통점 :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, 법률로 금지되어있는 행위라는 점
- 차이점
 - 성희롱 :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서 형사처벌이 아닌, 조직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함
 - 성폭력 :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행위자 개인이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과 「형법」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음
- 유의점 : 하나의 행위가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상 성희롱 관련 규정과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 「형법」 등의 성폭력 관련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음

Ⅲ. 수원시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 시스템

1 사건 처리 절차 개요

1) 내부 신고 사건 처리 절차

- 관련 근거
 - ☞ 「수원시 인권 기본조례」
 - ☞ 「수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」
 - ☞ 「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」
 - ☞ 「수원시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지침」



[그림 1] 내부 신고 사건 처리 절차

○ 수원시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주요 제도

[표 2] 수원시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 창구

① 전화	· 고충상담원 전화번호 ☎ 228-2992(여), 2498(남)
	·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 ☎ 228-2616(여), 2617(남) ※ 수원시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시민인권보호관이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조사 전담
② 사이버 상담·신고	· 온라인 신고 게시판(수원시) 시민참여> 인권아카이브> 인권침해신고 (https://www.suwon.go.kr/web/board/BD_board.list.do?bbsCd=1203)
	· 이메일(suwonrights@korea.kr)
③ 방문	· 수원시 인권센터(수원시청 별관 7층)

○ 수원시 협업기관 사건 처리 절차

- 협업기관 내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은 당해 기관에서 접수·조사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며, 피해자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내부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또는 외부 성희롱·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을 안내하고, 기관의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
- 다만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원시 인권센터로 즉시 사건을 이첩하여 조사·처리
 - 성희롱·성폭력 행위자가 각 기관의 기관장이거나 정관에 따른 임원인 경우
 - 피해자가 사건의 접수 또는 조사 등을 수원시에서 처리하기 원하는 경우
 - ※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, 수원시 인권담당관에 절차 확인하여 공문으로 이첩
- 수원시는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「수원시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지침」 제19조에 따라 협업기관(공직유관단체)에 대한 성희롱·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
- 민간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의 경우 수원시의 조사 권한이 없어 초기 상담 후 타 구제기관 등을 안내

[표 3] 수원시 협업기관의 범위

①	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
②	시의 사무위탁기관(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)
③	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 및 단체

※ 「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25조 1항에 따른 조사범위에 한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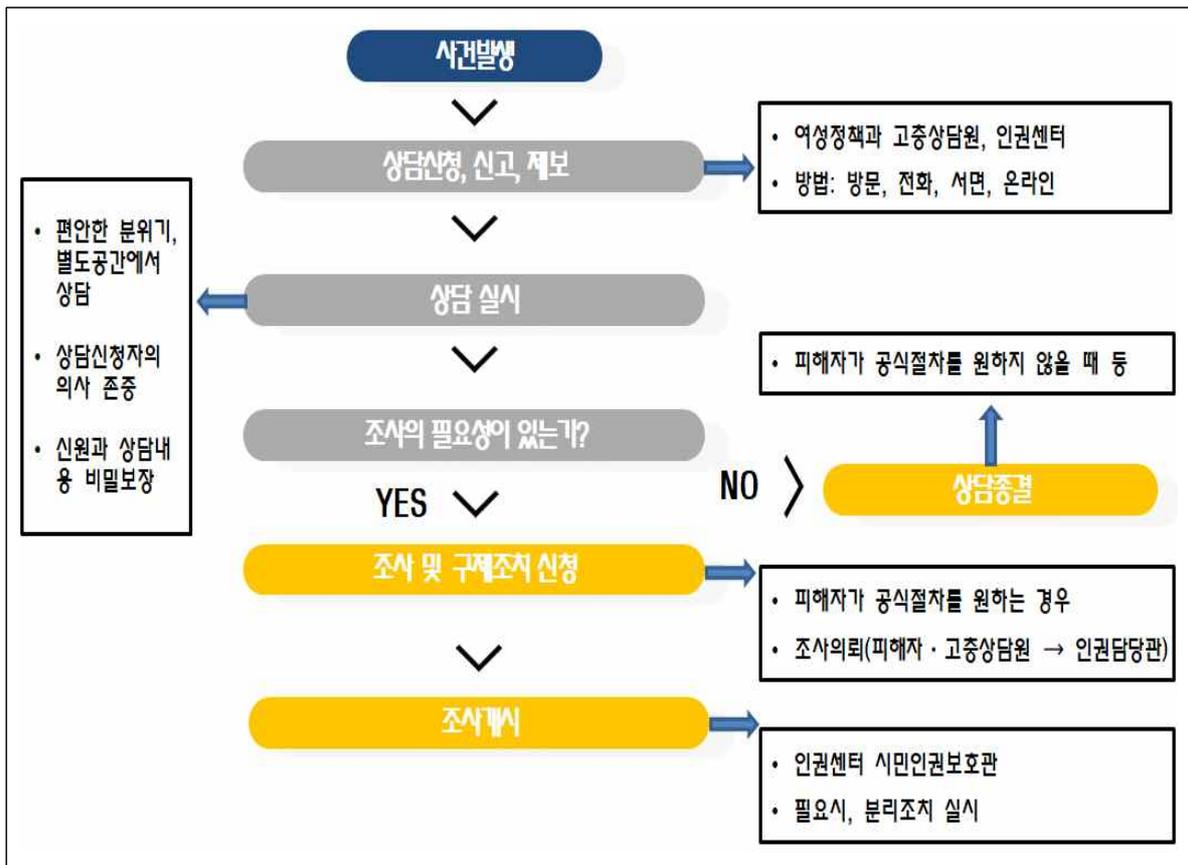
○ 타 구제기관(경찰 등) 신고사건 처리 절차

- 타 구제기관(경찰 등)에 신고 된 사건은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기관의 조사 결과(수사 개시, 수사 결과 → 수원시에 통보 등)에 따라 인사조치, 행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

2) 사건 처리 세부 절차 - 인지·상담·신고(접수)단계

- ☞ 인지단계에서 취할 조치는 없으며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한 후, 향후 처리방향 논의
- ☞ 상담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사건의 개요 파악 및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목적
- ☞ 신고(접수)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성희롱·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경우 '신청서'를 작성하여 제출,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신청 접수 실시

- 성희롱·성폭력 고충사건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, 대리인, 목격자 등은 고충상담원, 인권센터에 전화, 온라인, 서면, 방문 등으로 상담 신청, 신고, 제보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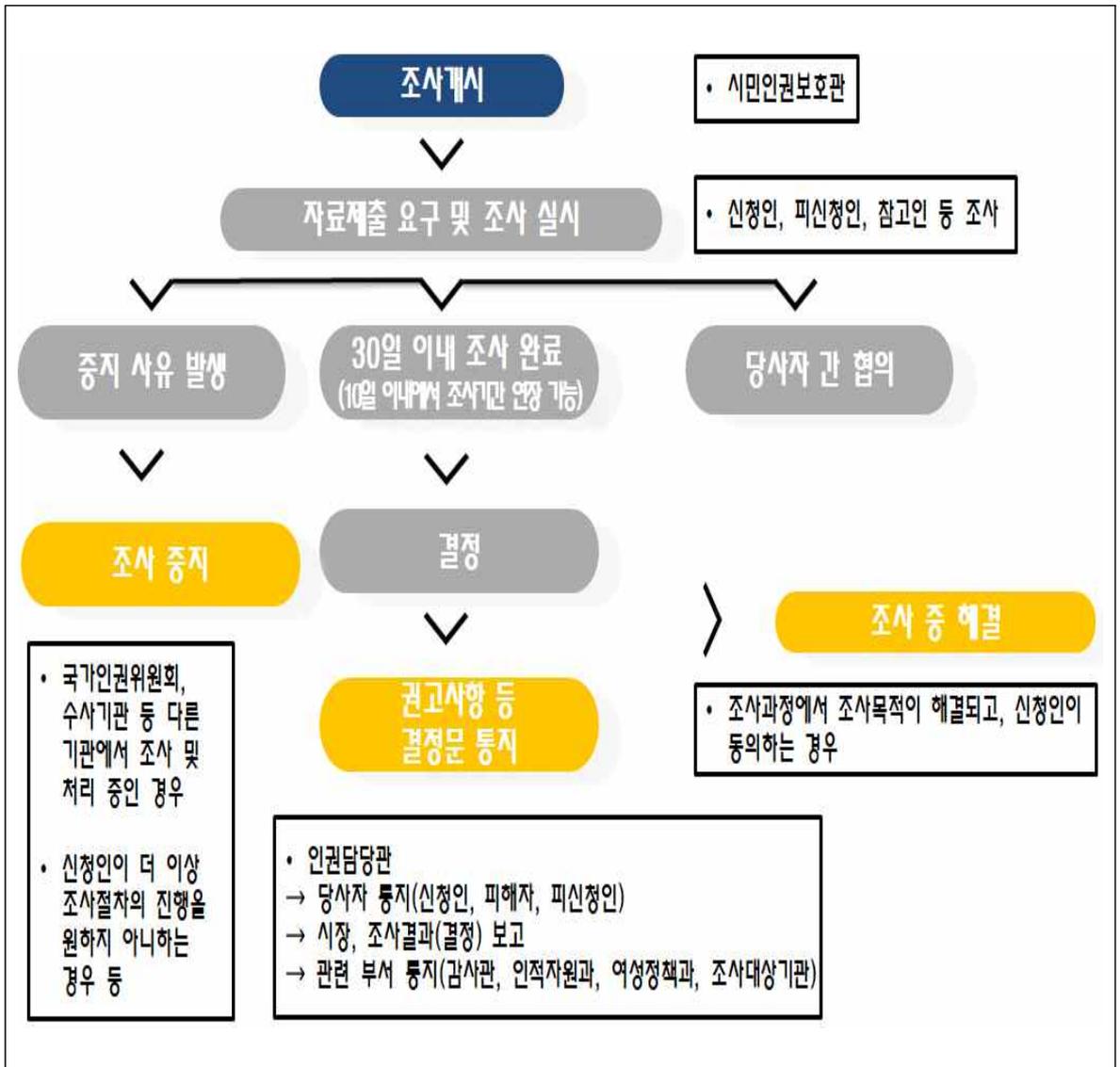
[그림 2] 인지·상담·신고(접수)단계 절차

3) 사건 처리 세부 절차 - 조사(결정)단계

- ☞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조사절차를 게시
- ☞ 조사 과정에서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명시 후 해당 조사를 종결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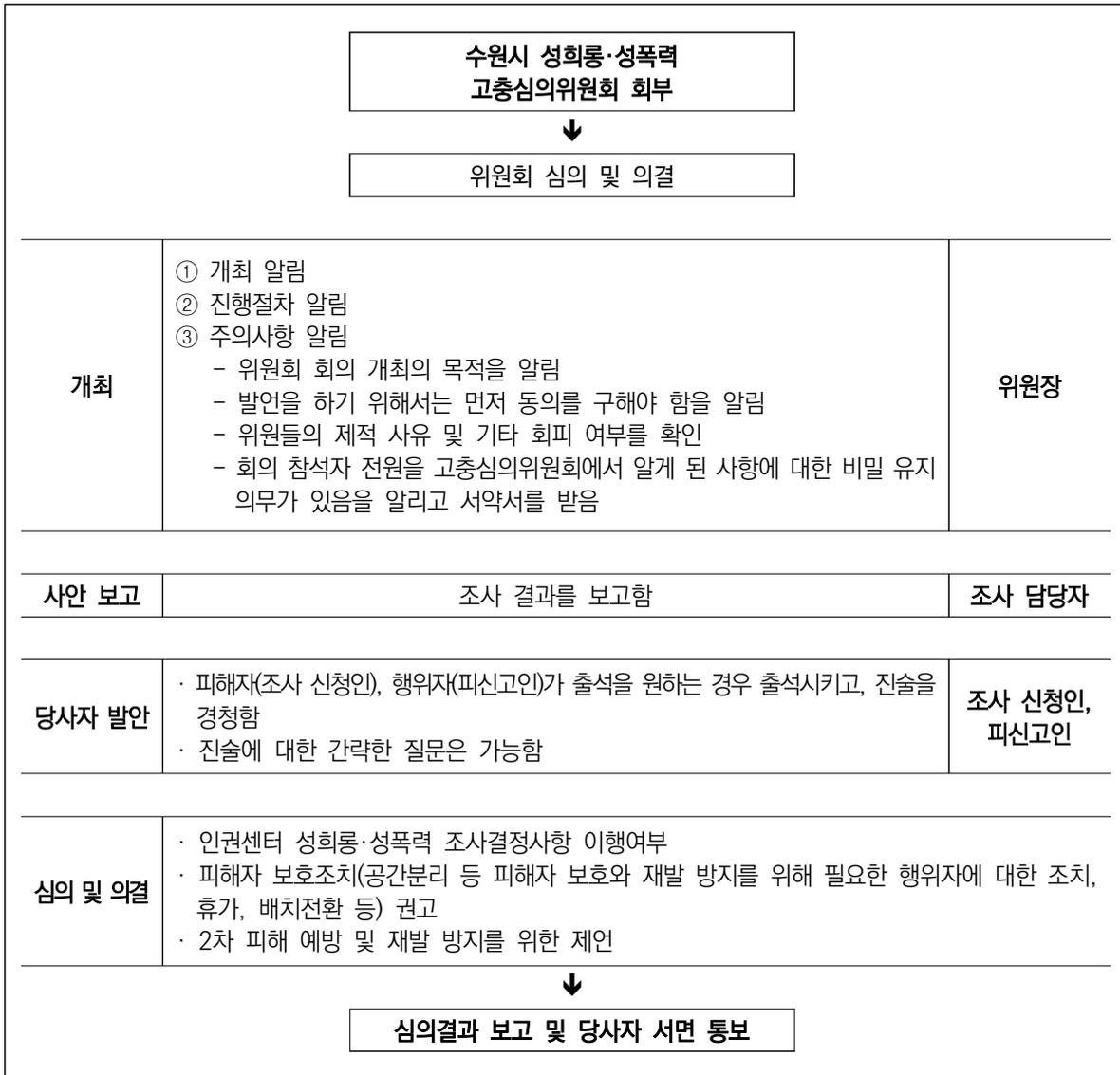
○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조사절차를 게시해야 함

- 필수적으로 피해자가 시민인권보호관과 상담 후 신고 여부 결정하도록 안내함



[그림 3] 조사(결정)단계 절차

○ 수원시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조사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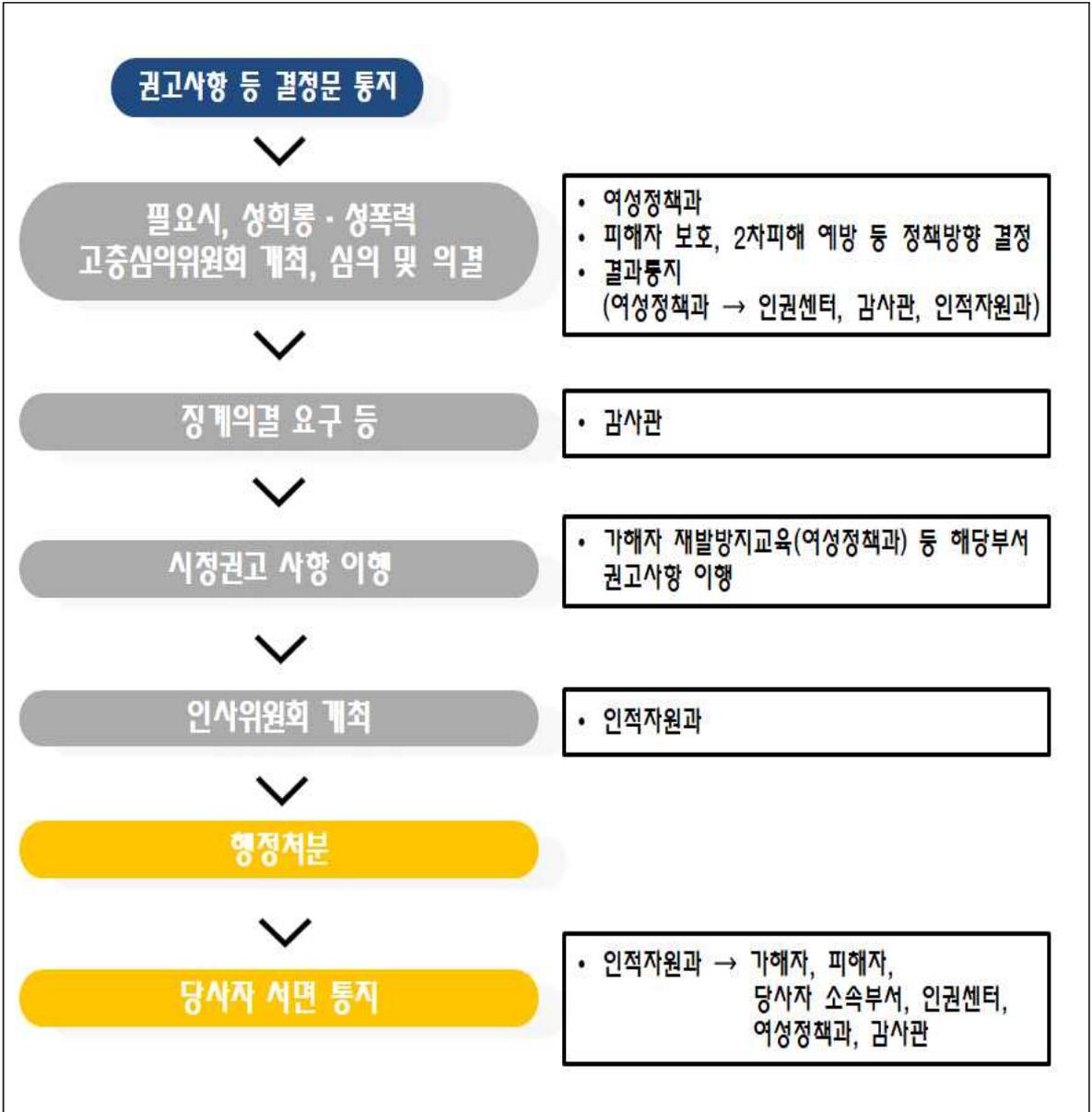
[그림 4] 수원시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조사 진행 절차

○ 협업기관의 경우

- 각 기관에 「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」 등 내부지침을 마련하고,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함
-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및 운영방식 등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,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함

4) 사건 처리 세부 절차 - 사건 종결 및 사후조치단계

- ☞ 조사 결과 성희롱·성폭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 실시
- ☞ 성희롱·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조사 종결
- ☞ 피해자에게 심리치유 및 법률상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, 인권담당관은 피해자 대상으로 2차 가해 여부 등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 실시



[그림 5] 사건 종결 및 사후조치단계 절차

2 피해자 지원

1)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인권센터 운영

○ 고충상담창구

- 여성정책과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원 (☎ 031-228-2992(여), 2498(남))
- 수원시청 케이휘슬
 - 외부망에서도 PC, 모바일 앱(수원시청 케이휘슬)을 통해 익명제보 및 신고 가능
 - [PC] www.kbci.org ▶ 헬프라인(익명신고) ▶ 수원시청 검색 ▶ 신고
 - [모바일] 구글 플레이스토어 ▶ 수원시청 케이휘슬 다운 ▶ 헬프라인(익명신고) ▶ 신고
 - [행정포털] 로그인 ▶ 메인화면 하단 '공직자 신고' ▶ 공직비리(갑질) 익명 신고 ▶ 신고

○ 인권센터 : 시민인권보호관 (☎ 031-228-2618, 2666, 2617), (✉ suwonrights@korea.kr)

○ 피해자 지원기관

- 내 부 : 마음돌봄상담실 (☎ 031-228-2289)
- 외 부
 - 수원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(☎ 031-246-2080, 1670-1611: 전국공통)
 - (사)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(☎ 031-224-6888)

2) 의료 및 법률지원

○ 심리상담 지원(내부기관) * 초기 상담에 따라 의료비 지원 여부 결정

- 마음돌봄상담실(시청 1층) (☎ 031-228-2289)
- 심리상담 및 지정클리닉 연계가능

○ 의료 지원(외부기관)

-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(거점) (☎ 031-215-1117)
-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(☎ 031-224-6888)

○ 법률 지원(외부기관)

-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(☎ 031-213-0773)
-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(거점) (☎ 031-215-1117)
-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(☎ 031-224-6888)

IV. 주체별 대응방안

1 기관장·관리자

1) 기관장

- 기관장(사업주)은 성희롱·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등 실시 의무
- 기관장(사업주)은 성희롱·성폭력 예방시스템 구축
- 기관장(사업주)은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행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시행
- 기관장(사업주)은 성희롱·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강구

2) 관리자

- 관리자가 성희롱·성폭력 사건 발생 시 어떻게 하느냐는 피해자 구제에 매우 중요
- 피해자가 요청한 면담을 통해서 사건을 인지한 경우, 고충상담원에게 상담 신청
- 사건 조사 진행 시, 피해자에 대한 최초 면담자로서 면담 내용에 대해 조사 시 협조
-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

1) 고충상담원

- 피해자의 말을 경청·공감·격려하며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움
- 피해자에 대한 비밀 보호를 최우선으로 진행
- 사건과 관련된 진술은 육하원칙이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기록
- 행위자가 징계 절차로 넘어간 후, 징계 결과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 실행

2) 피해자

- 성희롱·성폭력은 전적으로 행위자의 잘못
- 고충처리절차 등 성희롱·성폭력 문제의 해결 절차 숙지 및 해결 방법 모색
- 기관 내 제도를 먼저 이용하여 해결 도모,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외부기관 이용
-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반드시 문제제기 및 증거 등을 확보

3) 동료근로자

- 타인의 성적 불쾌감에 대해 함께 웃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이의제기
- 피해를 입은 동료가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림
- 기관 내 구제절차 과정 중에 겪게 되는 정서적 고충에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
- 비난하거나 수군거리는, 괴롭히는 행위 등은 피해자에 대하여 명백하게 불이익한 행위

4) 노동조합

- 노동조합은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의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등 모색
- 노동조합은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이 발생할 경우, 제대로 처리되도록 감시·감독
-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조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위해 노력
-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종료 이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

| 참고문헌 |

서울시, 2020, 『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』
 수원시, 2019, 『수원시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』
 수원시, 2021, 『2021년 수원시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종합계획』
 여성가족부, 2021, 『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및 해설』
 여성가족부, 2021, 『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』

고등교육법
 공직자윤리법
 국가인권위원회법
 근로기준법
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 민법
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 수원시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지침
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
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
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
 양성평등기본법
 여성폭력방지기본법
 정보통신망법
 지방공무원법
 초·중등교육법
 형법



발행인 | 김선희

발행처 | 수원시정연구원

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

031.220.8001

www.suwon.re.kr

※ 이 SRI 이슈 & 포커스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.